

수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52954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김민순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곽은정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6. 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원시 장안구 C, D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B의 어머니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피고와 B를 포함하여 6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 B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 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B는 2021. 4.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453,91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 세목                           | 금액(원)      |
|------------------------------|------------|
|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6,424,410  |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22,793,290 |
|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24,446,430 |
|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28,079,810 |
|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33,610,330 |
|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6,335,130  |

|                              |                    |
|------------------------------|--------------------|
|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10,589,550         |
|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가산금 포함 | 3,809,940          |
|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가산금 포함 | 5,326,410          |
| 2018년 주민세(개인균등), 가산금 포함      | 12,870             |
| 2019년 주민세(개인균등), 가산금 포함      | 12,870             |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가산금 포함      | 12,870             |
| <b>합계</b>                    | <b>141,453,910</b>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개인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세가 부과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9년 주민세 12,870원 및 2020년 주민세 12,870원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과적으로 위 2019년 및 2020년 주민세는 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B가 수원시에 주소를 둬으로써 부과된 것이기는 하나, B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인 2018. 10. 8.경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위 2019년 및 2020년 주민세의 각 과세기준일에도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둘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5년 전인 2016. 5. 12.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부분에 관하여는 2016. 6.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5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는 2019. 9.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인 2021. 5.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위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B의 지방세 체납액 합계 141,453,910원에서 2019년 주민세 12,870원 및 2020년 주민세 12,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428,170원에 대한 원고의 지방세징수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의 실질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B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로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결국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어머니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보다 적어 일부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어머니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적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주소] 수원시 장안구 C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95.26㎡

2층 585.18㎡

3층 585.18㎡

4층 585.18㎡

5층 585.18㎡

6층 585.18㎡

7층 585.18㎡

8층 585.18㎡

9층 585.18㎡

10층 585.18㎡

11층 585.18㎡

12층 585.18㎡

13층 585.18㎡

14층 585.18㎡

15층 585.18㎡

지층 589.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장안구 F 대 6224.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D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224.2분의 32.21. 끝.

